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78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 의 자 : 김주영 · 박 정 · 정태호
강득구 · 한정애 · 양문석
강준현 · 이기현 · 김태선
박해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운수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하여 운전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 버스 운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4(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해당 노선버스 운송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다.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라.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세금계산서

⑥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의2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 전액을 환급일로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제6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환급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의 이자상

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 ×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미지급환급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 ×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5조의4(노선버스 운송사업용</u> <u>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u> <u>환급에 관한 특례) ① 「여객</u> <u>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u> <u>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u> <u>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u> <u>하 이 조에서 “노선버스 운송</u> <u>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관</u> <u>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u> <u>“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u> <u>운송사업자가 해당 노선버스</u> <u>운송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u> <u>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u> <u>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u> <u>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u> <u>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u> <u>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u> <u>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u> <u>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노</u> <u>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할</u> <u>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기사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사재를 구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라.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

서

⑥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2조의2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 전액을 환급일로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제6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노선버스 운송사업
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
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6
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
지급환급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
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환급
세액 상당액 ×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일)] × 금
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

나.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액의 가산세

2.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미지
급환급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
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환급
세액 상당액 ×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
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
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
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율

다.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
액의 가산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
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u>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